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09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한창민 · 정혜경 · 용혜인
박정현 · 윤종오 · 김선민
전종덕 · 김 윤 · 차규근
최혁진 · 김동아 · 황운하
의원(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정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을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회적 요소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근로자·협력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이익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u>고려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⑤·⑥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 ---<u>고려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사회적 요소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근로자·협력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이익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u>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u> ② (현행과 같음)
---	---